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

국 가 개 요

1. 국명 : 도미니카공화국(República Dominicana)
2. 수도 :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294만명)
3. 인구・면적 : 1,083만명(2018년), 48,442㎢(한반도의 약 1/4 크기)
4. 공용어 : 스페인어
5. 1인당 GDP : 7,830불(2018년)
6. 독립일 : 1844.2.27.(아이티로부터)
7. 정부형태 및 의회 : 대통령중심제, 양원제

1. 명칭 : 헌법재판소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Dominican Republic
(Tribunal Constitucion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2. 연혁

○ 1844. 11. 6. 제헌 헌법

○ 2010. 1. 26. 헌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과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및 선거고등법원 신설

○ 2011. 6. 15. 헌법재판소와 헌법적 절차에 관한 조직법 (Ley No. 137-11) 공포

○ 2015. 6. 13. 개정 헌법 공포

3. 구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Juez Presidente)을 포함한 13인의 재판

관(Juez)으로 구성

○ 재판관은 국가사법관위원회(Consejo Nacional de la Magistratura)에서 지명함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대통령 외에 상원의장, 상원의원(상원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2순위 정당 소속), 하원의장, 하원의원(하원의장과 다른 정당 소속이거나 2순위 정당 소속), 대법원장, 대법관 및 검찰총장으로 구성됨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받으며, 또한 재판관 자격을 갖춘 모든 시민은 자신을 추천할 수 있음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재판관 후보자를 공개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의견을 제출하는 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함
- 국가사법관위원회는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부재시 권한대행을 하게 될 (첫 번째의 및 두 번째의) 재판관을 지명함

○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연임 불가

- 다만, 대행하는 재판관이 5년 미만 재직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임 가능
-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3년마다 부분적으로 갱신됨

○ 재판관 자격(대법관 자격과 동일)

- 도미니카공화국 출생으로 35세 이상이면서 75세 미만인 자
- 정치적, 사법적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 자
- 변호사이거나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 변호사, 교수, 판사, 검찰에서 적어도 12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 이 기간은 누적 가능함

4. 권한

○ 법률, 규칙, 명령, 결정에 대한 규범통제(Control concentrado de constitucionalidad)

- 청구권자 : 대통령, 상원 또는 하원의 1/3 이상의 의원, 법적으로 보호되고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

○ 법관이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 규칙, 명령에 대한 규범통제(Control difuso de constitucionalidad)

○ 국회가 동의하기 전의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Control preventivo de los tratados internaciones)

○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Conflictos de competencia)

○ 재판소원(Revisión constitucional de las decisiones jurisdiccionales)

- 1) 어느 결정에서 법률, 규칙, 명령 등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2) 어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반하는 경우, 3)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관련 사법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침해가 구제되지 않은 경우 등
- 특징적인 것은 헌법소원심판(Acción de amparo)을 일차적으로 일반법원(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함

5. 심리 및 결정

○ 헌법재판소의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이상의 가중 다수결에 의함

-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법정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판력이 있고 불복할 수 없음

- 심판대상조항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장래효를 지님. 다만 사안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음
-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변형결정을 내릴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과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함

○ 헌법재판소는 행정상 및 예산상의 자율성을 가짐

6. 연락처

○ 주　　소 : Ave. 27 de Febrero esq. Ave. Gregorio Luperón
Provincia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 전화번호 : +1 809 274 4445

○ 이 메 일 : oai@tc.gob.do

○ 홈페이지 : https://www.tribunalconstitucional.gob.do/

※ 출처 : 도미니카공화국 헌법
헌법재판소와 헌법적 절차에 관한 조직법(Ley No. 137-11)
헌법재판소와 헌법적 절차에 관한 조직법의 개정법(Ley No. 145-11)
외교부 도미니카공화국 개황

(2018. 8. 작성)